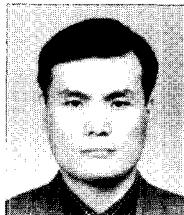


自然災害對策法 改正



심기오 | 국립방재연구소 토목연구관

최근의 기상이변, 도시화·산업화, 재해위험요인 증가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 추세에 대비하여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연재해관리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음

※ 자연재해대책법(법률제7359호) 개정법률 공포(05.1.27)

1. 서론

우리나라는 2002년의 태풍 ‘루사’, 2003년의 태풍 ‘매미’ 그리고 2004년의 태풍 ‘메기’ 등으로 인해 피해가 거대화 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¹⁾에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대비·대응 관련 조항 중 많은 부분이 흡수·통합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하였다.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전면개정하고자 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

의, 비상대처계획,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복구비 선지급 등 근원적 재해예방 및 복구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예방위주의 과학적 선진 방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중 근원적 재해예방과 자연재해저감 연구진흥 분야 및 복구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해예방분야에 있어서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기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등 재해경감을 위한 각종 기준의 제정·활용, 지진재해 경감 대책 및 상습가뭄지역 해소대책 등 재해유형별

1) 법률 제7188호(제정 2004. 3. 11.)

종합대책 수립, 국가긴급지원체계·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대비체제 구축 등을 의무화하였다.

- 자연재해저감 연구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예방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발생 복구분야에 있어서는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 등 사용시설 피해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 복구비를 선지급하고 복구비·구호비 또

는 위로금 등의 반환사유 발생시는 반환토록 하였다.

2. 법의 신·구 목차

최근 거대규모의 자연재난발생과 인적재난 발생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연계되어 재난관련 조직이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서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초대청장 권 육)으로 재난 전담조직이 탄생²⁾하므로써, 재해예방과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전·후의 조 목록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자연재해대책법의 신·구 조 목록 대조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제7240호(2004.10.22)	법률 제7359호(2005.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제4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방재조직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5조 재해대책위원회	제1절 자연재해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제6조 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7조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제8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제9조 지시 등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제10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	제8조 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참여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	제9조 재해원인조사·분석 등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3조 방재조직의 공조	제11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3장 방재계획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14조 방재기본계획의 작성	제13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5조 방재기본계획사항	제1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 방재집행계획의 작성	제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안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제17조 방재집행계획사항	제2절 풍수해 제16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

2) 소방방재청 개청(2004. 6. 1)

기 술 분 야

표 1. 자연재해대책법의 신·구 조 목록 대조(계속)

개정전	개정후
법률 제7240호(2004.10.22)	
제18조 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제19조 지역방재계획의 작성	제18조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20조 지역방재계획사항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제21조 민방위계획과의 관계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4장 재해예방	제21조 각종 지도의 제작·활용
제22조 재해예방	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23조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제3절 지진
제24조 물자·자재의 비축 등	제23조 지진재해경감대책
제25조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2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제25조 지진 및 화산관측의 통지
제27조 재해예방의 지도 등	제4절 설해
제28조 삭제	제26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제29조 삭제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0조 삭제	제28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제31조 삭제	제5절 가뭄
제32조 삭제	제29조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제33조 지진방재대책의 강화	제30조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 금수·발전 등
제3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제35조 지진관측의 통지	제32조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5장 재해응급대책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6조 재해응급대책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7조 발견자의 신고 등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8조 재해예·경보의 발령 등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9조 응급조치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40조 출동명령 등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41조 물건의 제거·사용 등	제38조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대행 등
제42조 퇴거조치 등	제39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43조 경계구역의 설정 등	제40조 비상대처계획수립자 및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4조 삭제	제41조 업무의 휴지 및 폐지
제45조 응급조치의 지원 등	제42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 취소 등
제46조 삭제	제43조 청문
제47조 시설·물자의 관리·사용 등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업무계속
제48조 통행제한 등	제45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제49조 응급조치의 대행 등	제4장 재해복구
제50조 지정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등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제51조 문책요구 등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제6장 재해복구	제48조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표 1. 자연재해대책법의 신·구 조 목록 대조(계속)

개정전	개정후
법률 제7240호(2004.10.22)	
법률 제7359호(2005.1.27)	
제52조 피해상황의 보고	제49조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제53조 재해복구의무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4조 중앙합동조사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제55조 재해복구계획의 확정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6조 예산조치	제53조 복구용자재 등의 우선공급 등
제57조 재해대장	제54조 복구비 등의 반환
제7장 보조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제58조 비용의 부담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제59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60조 삭제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61조 손실보상	제58조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62조 국고보조 등	제59조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제62조의2 특별재해지역	제60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제61조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활용 등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5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63조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보금 등
제66조 협회의 정관 등	제6장 보조
제67조 권한의 위임	제64조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8장 벌칙	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 삭제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9조 벌칙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반영 등
제70조 벌칙	제68조 손실보상
제71조 벌칙	제6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72조 양벌규정	제70조 국고보조 등
	제71조 압류의 금지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5조 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76조 권한의 위임
제77조 벌칙	제7장 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제79조 과태료

3. 개정된 주요내용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하여 주요 개정 내용만을 정리하였다.

1)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를 의무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해발생우려 시설·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3조).

2)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

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함(제4조).

- 3)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심의위원회에 방재분야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해영향성에 관한 검토의 견이 반영되도록 함(제8조).
- 4) 중앙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의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5)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15조).
- 6)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 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은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제17조).
- 8) 소방방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및 홍수피해예상 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함(제18조).
- 9)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 유출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9조).
-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풍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내풍설계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제20조).

-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도를 작성·배포하여야 하고, 지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제21조).
-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제23조, 제24조).
- 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함(제26조, 제28조).
- 1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제29조, 제33조).
- 1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대응·복구 등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34조).
- 16)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중앙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역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5조, 제36조).
- 17) 댐·다중이용시설 및 해안지역 등의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7조).
- 1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도록 함(제45조).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

- 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제47조, 제48조).
- 20)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재처리하도록 함(제49조).
- 21)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 22)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제51조).
- 23)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 24)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제57조).
- 2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재해대책업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8조).
- 26)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71조).

4. 결론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산업의 발달은 투수지역을 불투수지역으로 변환시켰으며, 이러한 지역개발은 지구촌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전면적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화 또는 강화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거쳐 효율적인 재해 예방·복구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발달로 인하여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심도가 있으며 광범위하다. 이번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허공속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재난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므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다.